

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60일
신청인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생년월일
	소재지	전화번호

「선박관리산업발전법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기준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따른 자체 심사표 1부 2. 재무제표 1부 3. 회계보고서 1부 4. 그 밖에 심사항목별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로서 「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	수수료 3백만원 (인증심사를 하는 사람 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인증신청자가 별도 부담)
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	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	
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사업자등록증	신청인 제출 서류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사업자등록증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신청 접수 기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확인 및 서류 검토	➔	인증심사	➔	결 제	➔	인증서 발급
--------	---	-----	---	------------	---	------	---	-----	---	--------

신청인 처리기관: 해양수산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(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담당부서)